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6. 10. .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4일 / 이의결위원회의 9인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6. 10. 17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장 상 기 의원)

□ 제안이유

자치회관 간 상호 필요한 정보공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설치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자치회관의 운영·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
(안 제 25조 내지 제3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합 의 : 자치안전과

라. 기 타

- 입법예고 실시(2016. 10. 6. ~ 10. 11.) 결과 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김광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”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설치목적을 명시하였고
 - 안 제26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‘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’ 등을 규정하였음
 - 안 제27조에서 협의회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, 회장 1명, 부회장 3명, 감사 1명, 간사 1명을 임원으로 두고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음.
 - 안 제28조에는 회장, 부회장, 간사의 직무에 대해 명시

- 안 제29조에는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, 2개월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돼 있음
- 안 제30조에 회장은 협의회 협의·자문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
- 안 제31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※ **참고사항(자치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구성 현황)**

- 조례에 규정 : 12개(성북, 강북, 노원, 은평, 양천, 구로, 금천, 관악, 서초, 강남, 송파, 강동)
- 임의조직으로 운영 : 12개(종로, 중구, 용산, 광진, 동대문, 중랑, 도봉, 서대문, 마포구, 영등포, 동작구, 강서구)
- 미구성 : 성동구

- 현재 동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외에 주민을 위한 문화·복지·편익기능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 그 기능은 점차 다양화 돼 가고 있음에 따라
 - 자치회관간의 정보교환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, 발전적 방향으로 자치회관을 총괄하고 조율하기 위해 '협의회' 구성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경비 지원 사항을 명시한 바, 구 재정여건과 유사 단체의 도미노 현상 발생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